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4. 2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9. 4. 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가. 제안이유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
-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 및 부과항목 신설
 - 행위에 의한 부과에서 배출량에 의한 차등부과로 조정
 - 현행 : 배출량의 구분없이 1차 기준 100,000원
 - 개정 : 20ℓ 이하 → 30,000원, 50ℓ 이하 → 50,000원 100ℓ 이하 → 100,000원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신설)
 - (1차 → 100,000원, 2차 → 300,000원 3차 → 500,000원)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기준의 근거는?	○ 폐기물관련 과태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적의 조정하였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47 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
-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의 직정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 및 부과항목 신설
 - 행위에 의한 부과에서 배출량에 의한 차등부과로 조정
 - 현행 : 배출량의 구분없이 1차기준 100,000원
 - 개정 : 20ℓ 이하 → 30,000원, 50ℓ 이하 → 50,000원, 100ℓ 이하 → 100,000원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신설)
 - (1차 → 100,000원, 2차 → 300,000원, 3차 → 500,000원) 등

첨부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리관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의 적용법·부과항목 및 부과금액 중 폐기물관리법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1톤 미만	200	300	500
	(2) 1톤 이상 3톤 미만	300	500	700
	(3) 3톤 이상 5톤 미만	400	600	800
	(4) 5톤 이상	500	700	90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 제외)			
(1) 5톤 미만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2) 5톤 이상	1,000	1,000	1,000
	2.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100	300	500
	3.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 20ℓ 이하	30	50	100
	(2) 50ℓ 이하	50	100	200
	(3) 100ℓ 이하	100	200	50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1) 20ℓ 이하	20	20	20
	(2) 50ℓ 이하	30	30	30
	(3) 100ℓ 이하	50	50	50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200	500	1,000
	5.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30조제3항)	300	500	1,000
	6.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500	500
	7.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4조제3항, 제41조)	300	500	1,000
	8.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1항, 제2항)	100	300	5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9. 폐기물처리 등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3조제1항)	100	300	500
	10. 폐기물검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500	1,000	2,000
	11.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법 제44조의2제1항)	1,000	2,000	3,000
	12. 폐기물 재생처리시설의 시설, 장비의 개선 등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시설, 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44조의2제3항)	1,000	2,000	3,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7조)				폐기물	1. (현행과 같음)			
	가.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관리법	가. (현행과 같음)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1) 10킬로그램 미만	50	50	50					
	(2) 10킬로그램 이상	99	99	99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1) 10킬로그램 미만	100	100	100	폐기물관리법	라. (현행과 같음)				
	(2) 10킬로그램 이상	199	199	199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1톤 미만	200	200	200			(1) (현행과 같음)	200	300	500
	(2) 1톤 이상 3톤 미만	300	300	300			(2) (현행과 같음)	300	500	700
	(3) 3톤 이상 5톤 미만	400	400	400			(3) (현행과 같음)	400	600	800
	(4) 5톤 이상	499	499	499			(4) (현행과 같음)	500	700	90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법 제14조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폐기물 생성처리 신고를 한 자 제외)			
	(1) 5톤 미만	500	500	500			(1) 5톤 미만	500	700	1,000
(2) 5톤 이상	1,000	1,000	1,000	(2) 5톤 이상			1,000	1,000	1,000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신설) 2.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시·구별로 지정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폐기물관리법 2.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3. 생활폐기물.....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 20ℓ 이하 (2) 50ℓ 이하 (3) 100ℓ 이하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1) 20ℓ 이하	100	300	50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30	50	100		
						50	100	200		
						100	200	500		
								20	20	2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 기 물 관 리 법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300	500	1,000	폐 기 물 관 리 법	(2) 50ℓ 이하 (3) 100ℓ 이하	30 50	30 50	30 50
	4.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중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법 제17조제4항) (신설)	500	700	1,000		4. 생활폐기물..... (삭제)	200	500	1,000
	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제3항)	1,000	--	--		5.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30조제3항)	300	500	1,000
	6. 생략 (신설)					6.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500	500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1항, 제2항)	100	300	500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신설)				폐기물관리법	9. 폐기물처리 등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3조제1항)	100	300	500
	(신설)					10. 폐기물검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500	1,000	2,000
	(신설)					11.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법 제44조의2제1항)	1,000	2,000	3,000
	(신설)					12. 폐기물 재생처리 시설의 시설, 장비의 개선 등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시설, 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44조의2제3항)	1,000	2,000	3,000